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계룡시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

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통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